

4. 個別土地價格合同調查指針中 改正令

國務總理 訓領 第248號 1991. 4. 2

개별토지합동조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등 관계행정기관장이 그 가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으로 한다”를 “으로 편성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개별토지가격 조사업무를 합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한국토지개발공사·국토개발연구원 및 한국감정원의 직원과 감정평가사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③중앙통제부는 내무부, 건설부 및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각 시·도 통제반을 지휘·총괄·지원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직원과 감정평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통제반은 시·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중앙통제부로부터 수명한 사항을 이행하고 점검반에 대한 지원 및 시·도 단위의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⑤점검반은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공무원과 중앙통제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한국감정원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토지가격의 조사·산정을 점검하고 자문에 응하는 등 조사반의 업무를 점검·지원한다. 다만, 지가의 변동이 심한 지역내의 토지등의 가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세청소속 공무원을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

⑥조사반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무원으로 편성하며, 개별토지의 특성 및 지가의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가의 변동이 심한 지역내의 토

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다 정밀하게 지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켜 조사반을 구성한다.

제4조중 “과장을”을 “국장 또는 과장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가의 결정절차) 개별토지가격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가의 일제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별토지가격의 조사 및 산정
2.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3. 산정된 지가의 공개·열람 및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접수
4.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5.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6. 건설부장관의 확인
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가결정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가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지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지가심의회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심의한다.

1.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산정된 지가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
 3. 기타 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가의 지역별 균형
2. 이 지침에 의한 조사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3. 관계절차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4. 기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조사·산정한 지가를 개별

토지가격으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방법 등을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와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가의 재조사 청구등) ①개

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를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가의 재조사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조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거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청구서식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

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4(지가 조정등의 보고)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제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한 경우
2.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조정결정한 경우
3.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사항과 토지기록 전산자료등 관련자료는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행정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